

	<h2 style="margin: 0;">대학평의위원회 규정</h2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07. 9. 10.
		최종개정일자	2020. 8. 06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27조 및 학칙 제80조에 따라 목포과학대학교에 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〈조 개정 2017.12.29〉〈조 개정 2018.6.7〉

**제2조(기능)** ① 대학평의위원회(이하 "평의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〈조 개정 2014.4.21〉〈조 개정 2017.12.29〉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〈개정 2017.12.29〉
4.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 또는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〈개정 2017.12.29〉

②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〈개정 2017.12.29〉〈개정 2018.6.7〉

1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〈개정 2017.12.29〉
2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〈개정 2017.12.29〉
3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## 제2장 조직

**제3조(구성 및 자격)** ① 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〈조 개정 2017.12.29〉〈조 개정 2018.6.7〉

1. 교원 5명〈개정 2017.12.29〉〈개정 2018.6.7〉〈개정 2020.8.6.〉
2. 직원 3명(정규직원에 한한다)〈개정 2017.12.29〉
3. 조교 1명〈개정 2017.12.29〉
4. 학생 2명〈개정 2017.12.29.〉〈개정 2020.8.6.〉
5. 동문 1명〈개정 2017.12.29.〉
6. 그 밖에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〈개정 2017.12.29〉

② 교원은 조교수 이상 재직자로 한다.〈개정 2018.6.7〉

③ 직원은 일반직 정규직원 재직자로 한다.〈개정 2018.6.7〉

④ 조교는 대학에 재직한 자로 한다.〈개정 2018.6.7〉

⑤ 학생평의원은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.〈개정 2018.6.7〉

⑥ 동문평의원은 대학 동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문 중에서 위촉한다.〈개정 2018.6.7〉

⑦그 밖의 평의원은 교직원, 조교, 학생, 동문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<개정 2018.6.7>

⑧교원평의원, 직원평의원, 조교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<개정 2018.6.7>

1. 퇴직을 한 경우
2.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
3. 직위해제 된 경우
4.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5. 6개월 이상 해외연수, 산업체 연수 등

⑨학생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<개정 2018.6.7>

1. 졸업한 경우
2. 휴학한 경우
3.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
**제4조(추천 및 위촉)**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<조 개정 2018.6.7>

1.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계열별 교수회의에서 공학계열 1명, 자연과학계열 2명, 인문사회·예체능계열에서 2명을 각각 추천받아 위촉한다.<개정 2020.8.6.>
2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.
3.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.

②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5조(임원)**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<조 개정 2018.6.7>

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
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조 개정 2018.6.7>

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,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, 평의원회 의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과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회의

**제7조(회의)**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3월, 9월에 개최한다.<조 개정 2018.6.7>

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
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3.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③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(긴급한 경우 3일)전 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공문으로 공지하고 각 위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8.6.>

**제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평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<조 개정 2018.6.7>

**제9조(회의록)** ①평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평의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<조 개정 2018.6.7>

②평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회의록을 회의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0일 이내에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20.8.6.>

1. 회의록에 포함된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공개될 경우 대학평의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자료 요청 등)** ①평의위원회는 제2조 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,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조 개정 2018.6.7>

②관련 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비밀유지)**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조 개정 2018.6.7>

**제12조(예산)** 총장은 평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.<조 개정 2018.6.7>

##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

**제13조(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)** ①의장은 법인정관 제14조의 ①항에 의하여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법인정관 제14조의 ②항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 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<조 개정 2018.6.7>

## 제5장 보칙

**제14조(규정개정)**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<조 개정 2018.6.7>

**제15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가 따로 정한다.<조 개정 2018.6.7>

### 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7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8년 6월 7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8월 6일 부터 시행한다.